

# 학과 제출용

[붙임4]

## 현 장 실 습 협 약 서

제1조(목적) 이 협약서는 실습기관명 기재 회사 (이하 "현장실습기관"이라 한다)과 현장실습이수학생(이하 "현장실습생"이라 한다)과 백석문화대학교가 상호간의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과 경험습득을 통하여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현장실습생이라 함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닌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(업무)을 경험하는 자를 말한다.

제2조(현장실습기관과 현장실습생의 상호 협력) "현장실습기관"은 폭넓은 현장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"현장실습생"의 전공 및 희망을 고려하여 현장에 배치하고, 해당업무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담당자 등이 지도하는 등 내실있는 현장실습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"현장실습생"은 현장실습 기간 동안 주어진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며, 수련기관이 요구하는 제반 수칙을 준수한다. 아울러, 수련을 위한 기계 등 장비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하며, 수련과정에서 알게 된 수련기관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아니한다.

제3조(현장실습시간 및 장소) 현장실습 기간은 2023 . . . 일부터 2023 . . . 일 까지( 주)( 일)로 하며 실습시간은 . . . ~ . . . 으로 한다. 또한 장소는 현장실습 기관장의 사업장으로 한다.

\* 실습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야간에 실시될 수 없다. 다만, 예외적으로 사전에 연장, 야간, 휴일 실습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인정되고 사전에 실습 과정으로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백석문화대학교 및 현장실습생의 동의하에 연장, 야간, 휴일에 실시할 수 있다.

제4조(실습 내용) 간단하게 작성

제5조(실습비 지원) ①"현장실습기관"은 "현장실습생"에게 매 월 \_\_\_\_\_원을 지급한다.

- \* 지급내역 : 총 \_\_\_\_\_원
- \* 지급방법 : 은행계좌      직접지급
- \* 산정기간 : 당월 \_\_\_\_\_일부터 당월 \_\_\_\_\_일까지

②"백석문화대학교(학생)"은 "산업체"에게 실습비 \_\_\_\_\_원을 지급한다. ex) 200,000

- \* 지급내역 : 총 \_\_\_\_\_원

동일하게 작성

\* 지급방법 : 은행계좌      직접지급

\* 산정기간 : 당월      일부터 당월      일까지( 00 주)

**제6조(안전 예방 및 보호)** ① "현장실습기관"은 현장실습 업무에서 위험하거나 유해한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,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.

② "현장실습기관"은 실습과정에서 "현장장실습생"에 대하여 성희롱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관리 등 조치를 행한다.

**제7조(보험가입)** "현장실습기관"은 현장실습기간 동안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"현장실습생"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 다만, 관련 대학 등 제3자가 "현장실습생"을 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*제8조(후생복지 지원)** "현장실습기관"은 "현장실습생"에게 식당, 휴게실, 의무실, 기숙사, 통근버스 등의 복리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.

**제9조(수료증명서)** "현장실습기관"은 "현장실습생"이 요구하는 경우 현장실습 참여 사실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한다.

**제10조(우선 고용 노력)** "현장실습기관"은 실습기간을 성실하게 수료한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고용되도록 노력한다.

**제11조(현장실습 협약의 해지)** "현장실습기관"과 "백석문화대학교"는 현장실습 기간 동안에 협약을 해지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약 당사간의 협의에 의해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협약 해지일 10일전 까지 협약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기타)**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.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한 후 1부씩 보관한다.

현장실습기관

현장실습 의뢰기관

회사명 \_\_\_\_\_

백석문화대학교 사회복지학과

대표 \_\_\_\_\_ (서명)

학부장 권 향 임 (서명)



기관장 (센터장)

실습 하루 전날 (평일)로  
날짜 적기 (주말 x)

2023. . .

# 기관 제출 (앞장이랑 동일하게 작성하기)

[붙임4]

## 현 장 실 습 협 약 서

**제1조(목적)** 이 협약서는 \_\_\_\_\_ 회사 (이하 "현장실습기관" 이라 한다)과 현장실습이수학생(이하 "현장실습생"이라 한다)과 백석문화대학교가 상호간의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과 경험습득을 통하여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현장실습생이라 함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닌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(업무)을 경험하는 자를 말한다.

**제2조(현장실습기관과 현장실습생의 상호 협력)** "현장실습기관"은 폭넓은 현장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"현장실습생"의 전공 및 희망을 고려하여 현장에 배치하고, 해당업무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담당자 등이 지도하는 등 내실있는 현장실습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"현장실습생"은 현장실습 기간 동안 주어진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며, 수련기관이 요구하는 제반 수칙을 준수한다. 아울러, 수련을 위한 기계 등 장비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하며, 수련과정에서 알게 된 수련기관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아니한다.

**제3조(현장실습시간 및 장소)** 현장실습 기간은 \_\_\_\_\_ 일부터 \_\_\_\_\_ 일 까지( \_\_\_\_\_ 주)( \_\_\_\_\_ 일)로 하며 실습시간은 \_\_\_\_\_ : \_\_\_\_\_ ~ \_\_\_\_\_ : \_\_\_\_\_ 으로 한다. 또한 장소는 현장실습 기관장의 사업장으로 한다.

\* 실습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야간에 실시될 수 없다. 다만, 예외적으로 사전에 연장, 야간, 휴일 실습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인정되고 사전에 실습 과정으로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백석문화대학교 및 현장실습생의 동의하에 연장, 야간, 휴일에 실시 할 수 있다.

**제4조(실습 내용)** \_\_\_\_\_

**제5조(실습비 지원)** ①"현장실습기관"은 "현장실습생"에게 매 월 \_\_\_\_\_ 원을 지급한다.

\* 지급내역 : 총 \_\_\_\_\_ 원

\* 지급방법 : 은행계좌 \_\_\_\_\_ 직접지급

\* 산정기간 : 당월 \_\_\_\_\_ 일부터 당월 \_\_\_\_\_ 일까지

②"백석문화대학교(학생)"은 "산업체"에게 실습비 \_\_\_\_\_ 원을 지급한다.

\* 지급내역 : 총 \_\_\_\_\_ 원

\* 지급방법 : 은행계좌 \_\_\_\_\_ 직접지급

\* 산정기간 : 당월 \_\_\_\_\_ 일부터 당월 \_\_\_\_\_ 일까지( 00 주)

**제6조(안전 예방 및 보호)** ① "현장실습기관"은 현장실습 업무에서 위험하거나 유해한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,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.

② "현장실습기관"은 실습과정에서 "현장장실습생"에 대하여 성희롱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관리 등 조치를 행한다.

**제7조(보험가입)** "현장실습기관"은 현장실습기간 동안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"현장실습생"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 다만, 관련 대학 등 제3자가 "현장실습생"을 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*제8조(후생복지 지원)** "현장실습기관"은 "현장실습생"에게 식당, 휴게실, 의무실, 기숙사, 통근버스 등의 복리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.

**제9조(수료증명서)** "현장실습기관"은 "현장실습생"이 요구하는 경우 현장실습 참여 사실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한다.

**제10조(우선 고용 노력)** "현장실습기관"은 실습기간을 성실하게 수료한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고용되도록 노력한다.

**제11조(현장실습 협약의 해지)** "현장실습기관"과 "백석문화대학교"는 현장실습 기간 동안에 협약을 해지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약 당사간의 협의에 의해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협약 해지일 10일전 까지 협약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기타)**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.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한 후 1부씩 보관한다.

2023. . .

현장실습의뢰기관

현장실습기관

백석문화대학교 사회복지학과

회사명

학과장 권 향 임 (서명)

대표 (서명)